



제 306 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도시교통위원회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442호) 결정(안) 의견청취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오남읍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
- 부지면적 : 근린공원 신설(A=31,761㎡)
- 제 안 자 : 남양주시장(공원조성과)

○ 주민 의견청취 결과

- 기 간 : 2024. 3. 28. ~ 4. 12.
- 공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당직실, 게시판, 신문, 시보
- 공람결과 : 주민의견 없음

○ 주요 입안 내용

-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A	공원	근린공원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	31,761	-	소로3-136 중복결정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	• 신설 - 31,761m ²	• 시민의 문화 및 휴식공간 창출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

○ 추진현황

- 2024. 1. 24.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요청
- 2024. 3. 28. : 주민공람·공고
- 2024. 4. ~ 7. : 관련부서 협의 및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2024. 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관련도면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관련부서 : 도시정책과

5. 검토의견

-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제3호에 따른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전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조성과 사업으로 오남읍 오남리 산72-5번지 일원 31,761㎡에 근린공원을 신설하여 시민의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입안한 사항으로,
오남읍 원도심 지역의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편익의 기여와 현재 대상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해소 및 경관개선 측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1.12] [[시행일 2021.7.13]]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12] [[시행일 2021.7.13]]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1.12] [[시행일 2021.7.13]]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

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21.1.12] [[시행일 2021.7.13]]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1.12] [[시행일 2021.7.13]]

[전문개정 2009.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제32977호(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26] [[시행일 2024.7.27]]

1.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삭제 [2022.11.1 제32977호(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3.5.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2.1.18]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4.1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1.18]

⑥ 삭제 [2021.7.6] [[시행일 2021.7.13]]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9.7.7, 2012.4.10, 2016.5.17, 2016.12.30, 2017.12.29, 2018.11.13, 2021.7.6] [[시행일 2021.7.13]]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11.13] [[시행일 2018.12.27]]

아. 삭제 [2005.9.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11.13] [[시행일 2018.12.27]]

카. 삭제 [2018.11.13] [[시행일 2018.12.27]]

타. 삭제 [2018.11.13] [[시행일 2018.12.27]]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조례 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시 기존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공급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 수반요인이 없음

4. 작성자

미래도시추진단 도시재생과장 송성희